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18-59호**  
**2018. 7. 27.(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 차 례

### 고 시(2)

-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고시 제2018-109호) .....1
-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고시 제2018-109호) .....2

### 공 고(7)

- 도로굴착사업계획신청 공고(공고 제2018-584호) .....3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8-585호) .....8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8-586호) .....10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알림(공고 제2018-593호) .....13
- 등록사항정정(경계, 면적) 대상토지 공고(공고 제2018-594호) .....14
-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공고 제2018-596호) .....15
-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공고 제2018-597호) .....18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8-599호) .....21

### 입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8-600호) .....23

공 람									
--------	--	--	--	--	--	--	--	--	--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신탄진동 138-9	신탄진로796번길 51	2018 7. 27.	건물신축	신탄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7,9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평촌동 542-23	덕암로188번길 37-14	2018 7. 27.	건물신축	덕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8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7)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4항 및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과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기준점 종류	기준점 번호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평면직각중형선좌표		평면직각중형선좌표		
		X 좌 표	Y 좌 표	X좌표	Y좌표	
도근점	9003	423852.790	241811.794	423816.85	241768.04	재설치
도근점	9004	423738.408	241722.950	423712.74	241696.28	"
도근점	9005	423701.157	241587.877	423701.38	241597.56	"
도근점	9005	423908.343	241688.992	423926.11	241713.32	"
도근점	9011	-	-	423997.11	241785.01	신설
도근점	9012	-	-	424053.17	241825.32	"
기 준 원 점 명		중부원점				
소 재 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현동 일원				
측 량 년 월 일		2018년 07월 17일				
측 량 성 과 보 관 장 소		대덕구청 민원지적과				
비 고		표지재질(철재)				

## 도로굴착사업계획신청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지하매설물(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을 설치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도로굴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굴착사업계획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신청대상

- 도시관리계획상 노폭 20m미만 도로
- 도시관리계획상 노폭 20m이상 도로의 보도부(차도횡단부분 포함)

2. 신청기간 : **2018년 8월 10일까지**

(2018년 3회 대덕구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예정일 : 2018년 8월중)

3.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조정신청서, 구간별 사진, 사업계획검토 시 참고자료, 각종 안전관리대책 각 1부

4.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설과

※ 대전광역시에서 도로점용(굴착·복구)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행중으로 사업계획서 제출자는 반드시 도로관리시스템(<https://vpn.daejeon.go.kr>[유관기관], [http://min.daejeon.go.kr/ungis\\_min](http://min.daejeon.go.kr/ungis_min)[개인민원])으로도 중복 제출 바람

5. 신청요령 :

가.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지하매설물(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설치 공사를 위하여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물 관리부서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번 심의에 상정이 불가하며, 개별적인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의 추가확보, 사업계획의 변경, 구민생활관련 민원사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항은 2018년도 7월 중 도로굴착 사업계획 신청공고 후 8월 중에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조정하게 됩니다.

※ 도로관리심의회 결과는 당해 연도(2018년)만 인정 가능하며, 당해 연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가 착수되지 않으면 해당 허가는 무효임.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 기간 연장 가능)

6.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건설과(042-608-5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신청자									
주소							전화번호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b>신청내역</b>									
번호	노선명	공사명	굴착구간	시행부서	매설관경	포장종류	연장(m)	공사기간	비고
첨부 : 1. 위치도면(1/5,000 현황도에 표시) 1부 2. 설계도면 가. 대전광역시의 수치지도 1/1,000에 지하매설물의 점유위치, 점유위치표지 등을 표시한 평면도 1부 나. 1/200축척으로 작성한 횡단면도 1부 3.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4. 주요지하매설물 사후관리계획(사업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1부 5. 교통소통대책 1부 6. 먼지발생대책 1부 7.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 8. 도로복구방법 1부 9.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도로굴착조정신청서

### 1. 신청개요

① 연 번							② 굴착 목적				
③ 굴착시행자							④ 굴착 위치				
⑤ 굴착개요	구 분	계	아스팔트	콘크리트	투수콘	보도블럭	비포장	기타	⑥ 굴착기간	신 청	
	연 장(m)									조 정	
	면 적(m <sup>2</sup> )										
⑦ 관 리 청 현지조사 검토의견											
⑧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치도 】						【 현 황 사 진 】				

## 2. 굴착단면도

연번	굴착구간		
1. 지하매설물 현황도			
※ 굴착지역에 대한 도로횡단면도임.(100M간격으로 작성)			
2. 굴착계획도(도로횡단면도)			
3. 관로굴착복구단면도			
4. 유관기관 확인	기관명	담당자	의견
(주요지하매설물에 한함)	상수도사업본부	(인)	
	충남 도시 가스	(인)	
	한국 전력 공사	(인)	
	대한송유관공사	(인)	
	한국 가스 공사	(인)	
	KT	(인)	
		(인)	
		(인)	

### 3. 각종 안전관리대책

연번		굴착구간
1.	교통소통대책	
2.	먼지발생 방지대책	
3.	안전사고방지대책	
4.	도로복구방법	
5.	도로시설물 유지대책	
6.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7.	검토자 의견	

- ※ 1. 지면이 부족한 경우 여러 장으로 나누어 작성
- 2. 7번의 사항은 심의기관에서 작성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점용장소 및 내역 :

허가 번호	점용 목적	굴착장소	시행자 (점용자)	시설물 종류	포장종류	굴착 연장 (m)	굴착 면적 (㎡)
2018-36호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설치	계	대전광역시 교통정책과	전선관	투수블럭	2.0	2.4
		오정동 175-48번지				2.0	2.4

2. 공사기간 : 2018. 07. ~ 2018. 11.

3. 공사 실시방법 : 노면 굴착

4. 도로굴착 및 복구주체 : 원인자(피허가자) 복구

5. 굴착 시 교통 대책 : 교통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등

6. 기 타 사 항 : 타 지하시설물 관련기관과 협의시행 및 허가조건 준수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오정동 175-48번지



2018. 07.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점용장소 및 내역 :

허가 번호	점용 목적	굴착장소	시행자 (점용자)	시설물 종류	포장종류	굴착 연장 (m)	굴착 면적 (㎡)
2018 -37호	도시가스관 철거	계	CNCITY 에너지	도시가스	아스팔트	4.0	8.0
		오정동 307-21번지 앞				2.0	4.0
		중리동 258-41번지 앞				2.0	4.0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3. 공사 실시방법 : 노면 굴착

4. 도로굴착 및 복구주체 : 원인자(피허가자) 복구

5. 굴착 시 교통 대책 : 교통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등

6. 기 타 사 항 : 타 지하시설물 관련기관과 협의시행 및 허가조건 준수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오정동 307-21번지 앞



2018. 07.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중리동 258-41번지 앞



2018. 07.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18. 7. 20.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공사관리 및 감독, 보조금 지원, 재·세정(공유재산관리, 지방세), 인·허가(도로·하천·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농지·산지 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용도변경·가설건축물 신고, 옥외 광고물 허가, 공장설립·등록, 화물 자동차운송사업허가, 배출시설 허가)분야 민원인 및 소속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18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등록사항정정(경계, 면적)대상토지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5조에 따라 아래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등록하고, 정정할 사항이 정리되기 전까지 지적측량을 할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대상 : “등록사항정정(경계, 면적)대상토지” 공고
2. 공고기간 : 2018. 7. 27. ~ 2018. 8. 11.(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소재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통지(등록)내역	비고
			정정 전	정정 후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산1-8	임야	28,959	31,141	신** 외 2인	(80)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경계 면적

#### 5. 기타사항

기타 사항은 대덕구청 민원지적과(지적담당 ☎042-608-53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대덕구청에서 시행하는 “용호천 무명1교 재가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어 재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사업개요

- 가) 사업의 명칭 : 용호천 무명1교 재가설공사
- 나) 사업 시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다) 시행자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 라) 사업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용호동 34번지 일원
- 마) 사업의 내용 : 교량 재가설 L=34m, B=8.0m
- 바) 수용할 토지 등의 내역 :

수용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변경전)	지목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주소
		공부	실제					
용호동	48-16 (48-4)	답	답	6	강의식	대덕구 용호동 50	-	-



## 2.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및 의견서 제출

가) 열람기간 : 2018. 7. 27. ~ 2018. 8. 13.(14일 이상)

나) 열람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설과(대덕구청 별관 3층)

다) 열람사항 :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라) 의견제출 : 열람기한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

마) 제 출 처 :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건설도로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설과

바) 기 타 : 세부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설과(☎ 042-608-5253)로 문의

붙임 의견서(서식) 1부. 끝.

# 의 건 서

1. 제	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건		
4. 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8. . . .</p> <p style="text-align: center;">의견 제출인 주 소 :</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명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전화번호 :</p> <p style="text-align: center;"><b>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 귀하</b></p>		
비 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대덕구청에서 시행하는 “장동·이현동 침수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어 재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사업개요

- 가) 사업의 명칭 : 장동·이현동 침수위험지역 정비공사
- 나) 사업 시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다) 시행자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 라) 사업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이현동일원
- 마) 사업의 내용 : 하천정비 진골천 L=260m, B=4.0m / 배오개천 L=60m, B=8.0m
- 바) 수용할 토지 등의 내역 :

수용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변경전)	지목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주소
		공부	실제					
장동	171-5 (171-3)	답	답	140	송태섭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542번길 121 천동위드힐아파트 3 11동 2***호	-	-

## 2.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및 의견서 제출

가) 열람기간 : 2018. 7. 27. ~ 2018. 8. 13.(14일 이상)

나) 열람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설과(대덕구청 별관 3층)

다) 열람사항 :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라) 의견제출 : 열람기한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

마) 제 출 처 :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건설도로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설과

바) 기 타 : 세부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설과(☎ 042-608-5253)로 문의

붙임 의견서(서식) 1부. 끝.

# 의 건 서

1. 제	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건		
4. 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8. . . .</p> <p style="text-align: center;">의견 제출인 주 소 :</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명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전화번호 :</p> <p style="text-align: center;"><b>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 귀하</b></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적 재조사사업지구(신대1지구) 조정금 미수령자에 대해 수령청구 안내(공탁예 고), 조정금 체납자에 대해 납부독촉을 토지소유자에게 고지하였으나, 수취 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7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18. 7. 27. ~ 8. 10. (14일간)
3. 공고장소 :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나. 기타 문의사항은 대덕구 민원지적과(☎042-608-5303, 53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공 시 송 달 조 서

사업지구명 : 신대1지구(붙임)

연 번	토지소재		지목	면적 (㎡)	소유자정보		공시송달 사유	비고
	동	지번			성명	송달주소		
1	신대동	355-7	대	119.3	변*균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2길 **, 203호	폐문부재 (보관기관 경과)	납부독 촉
2	신대동	177-13	도로	11.9	김*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	수취인불 명	납부독 촉
3	신대동	355-12	도로	97.1	강*근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덕로21 번길 20-**	수취인불 명	수령청 구
4	신대동	365-3	도로	18.6	김*설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19 0번길 **	수취인불 명	수령청 구
5	신대동	359-16	도로	1.0	김*포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덕로21 번길 30-**	수취인불 명	수령청 구
6	신대동	359-16	도로	1.0	박*근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덕로21 번길 30-**	수취인불 명	수령청 구
7	신대동	359-16	도로	1.0	이*열	대전광역시 동구 신대동 ***	주소불명	수령청 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제정이유

「대덕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정함(안 제3조).

다.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대해 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라.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에 대해 정함(안 제6조).

마. 사무의 위탁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해 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바. 포상에 대해 정함(안 제9조).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8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경제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경제과

(전화 : 042-608-6916, FAX : 042-608-3899, E-mail : sbd106@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과 담당자 서복동 (전화 : 042-  
608-691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취약계층”이란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

리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대덕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2. 청년창업 지원 및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②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문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
2.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3.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4. 그 밖에 취업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단체, 학교,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학교,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학교,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학교, 기업 등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학교, 기업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창출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 ⑥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 제 과	
담 당 자 연 락 처	서 복 동 042-608-6916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